

소규모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및 주권제출 공고

주식회사 센트랄은 2020년 08월 11일 이사회에서 상법 제522조 및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합병회사를 당사로 하고 피합병회사를 주식회사 네오씨티알로 하는 합병계약 승인을 결의하였습니다.

위 합병(합병기일은 2020년 10월 01일)에 따라 당사가 주식회사 네오씨티알의 모든 권리,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주식회사 네오씨티알은 소멸하는바, 상법 제527조의5에 의거 본 합병에 이의 있는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는 아래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또한 각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구.주권을 제출하시기를 바라는 바 이에 공고합니다.

1. 채권자이의제출 관련 사항

(1) 이의제출대상채권자 : 공고일 현재 당사의 채권을 보유하신 분

(2) 이의제출 기간 : 2020년 08월 19일~ 09월 26일

(3) 이의제출 장소 :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551(성산동) (055-278-0232)

2020년 08월 19일

주식회사 센트랄
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551(성산동)
대표이사 윤 용 호